

안산시장장(葬)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소속직원 중에서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직원에 대한 안산시장장 장례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상사망공직자”란 「공무원연금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공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2. “안산시장장”이란 안산시장이(이하 “시장”이라 한다)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가족장”이란 안산시장장 이외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 안산시 소속 공무원과 「안산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안산시 청원경찰 관리규정」을 적용받는 청원경찰(이하 “공직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안산시장장 대상) 안산시장장(이하 “시장장”이라 한다) 대상은 공무상사망공직자 중에서 「공무원 연금법」 제3조제항제2호에 따른 공무 중에 사망한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순직공직자로 하며, 공무상 재해로 인한 순직의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안산시장장 장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안산시장장 장의위원회) ① 시장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안산시장장 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국장·소장·본부장·구청장 및 직원대표(노조추천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이 된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1. 장례식의 일시·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2.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 3. 시장장 대상심의(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무상 재해로 인한 순직의 여부가 불분명한 대상의 심의)
 - 4.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
-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

- 제6조(장례기간 및 절차 등)** ① 시장장의 기간·절차 및 의식 등은 「건전가정 의례준칙」 및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
- ② 가족장인 경우의 노제는 소속 국·소·본부장·구청장이 관장한다. 단, 국·소·본부장·구청장 관할부서가 아닐 경우 사망자 담당부서에서 관장한다.(유가족이 원할 경우에 한함)

- 제7조(집행위원회)** ① 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공보관, 국 주무과장, 상록·단원 행정지원과장, 사망자 소속 부서장이 된다.
- ④ 집행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집행위원회는 장례절차에 따른 행정지원·의식·재무 등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⑥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무계장이 된다.

제8조(장례비용) 시장장인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례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 중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시 예산으로 지원한다.

제9조(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총 무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총무과장 안상철
	담당계장 직위·성명	총무계장 김종철
	담당자 성명·전화	문영진 (행정 2112)

【별표】

장제비기준(제8조 관련)

사 항 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안산시청장 지원내역				
영결식장 설치	면적 6m×3m=18m ² 높이 4m	식	1	규격이하 원칙 (제단, 친막, 의자, 영상 음향 등 원체)
현화용 꽃 및 균조리본 등				
가. 현화	일 반	개	500	조문객용
나. 균조리본	흑 색	개	300	유족·종사원·조문객용
다. 장갑	백 색	족	100	유족 및 종사원용
라. 넥타이	흑 색	개	20	유족용
마. 영구차 리본	대 형	개	1	
조화	대 형	개	1	시장명의
안내문 인쇄	모조32절 180g/m ²	부	500	
영구차	대 형	대	1	1일간
기타				1. 영결식 기자재 등 2. 노제비용

안산시장장(葬)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323
----------	------

제안년월일 : 2012. 12. 7.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장.

□ 수정이유

- 장례의 명칭으로 기관장의 명칭을 사용한 ‘시장장’ 보다는 기관의 명칭을 사용한 ‘시청장’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명칭이며, 장례의 의미를 더 명확히 하고 있다고 판단됨.

□ 주요골자

- 조례제명 변경(안산시장장→안산시청장).(조례제명)

안산시장장(葬)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장장(葬)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제명 중 “안산시장장”을 “안산시청장”으로 한다.

제1조 중 “안산시장장”을 “안산시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안산시장장”을 “안산시청장(이하 “시청장”이라 한다.)”로
하고, 제2조제3호 중 “안산시장장”을 “시청장”으로 한다.

제4조 조제목 중 “안산시장장 대상”을 “대상”으로 하고, 조문 중 “안산
시장장(이하 “시장장”이라 한다.)”를 “시청장”으로 하며, “안산시장장
장의위원회의”를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장의위원회의”로 한다.

제5조 조명 중 “안산시장장 장의위원회”를 “장의위원회”로 하고, “안산
시장장 장의위원회의”를 “안산시청장 장의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7항제3호 중 “시장장”을 “시청장”으로 한다.

신·구 조문 대비 표

원 안	수 정 안
<p>제5조 (<u>안산시장장 장의위원회</u>) ① 시장 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u>안산시장장 장의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둈다.</p> <p>② ~ ⑥ (생략)</p> <p>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p> <p>1. ~ 2. (생략)</p> <p>3. <u>시장장 대상심의</u>(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무상 재해로 인한 순직의 여부가 불분명한 대상의 심의)</p> <p>4. (생략)</p> <p>⑧ (생략)</p>	<p>제5조 (<u>장의위원회</u>) ① ----- ----- ----- <u>안산시청장 장의위원회</u>----- -----.</p> <p>② ~ ⑥ (원안과 같음)</p> <p>⑦ -----.</p> <p>1. ~ 2. (원안과 같음)</p> <p>3. <u>시청장</u> ----- -----</p> <p>4. (원안과 같음)</p> <p>⑧ (원안과 같음)</p>